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22
----------	-----

2021. 9. 14.(화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기창 의원 등 8인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8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9월 8일

-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기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징수방법 변경(안 제3조)

- 현행 수입증지 → 개정안 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, 전자결제 등

### ○ 수수료의 면제 변경(안 제4조)

-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 시험 및 검사 →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

## 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규정을 현실화 하고,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의 징부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, 띄어쓰기, 용어정비 등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제2조제1항 중 “제53조1항에 따라 산출”을 “제53조제1항에 따라 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

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 조문을 정비함.

- 제3조제2항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”로 개정사항을 반영함.
-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일정규모”를 “일정 규모”로, “충청북도내”를 “충청북도 내”로, “시공사간”을 “시공사 간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30% 이상”을 “30퍼센트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50%이상”을 “50퍼센트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“60%이상”을 각각 “60퍼센트 이상”으로 조문을 정비함.

1.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 하는 시험 등

- 제5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을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정비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‘21. 8.18.~‘21. 8.2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 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# 라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

반영하였으며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미비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**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(김기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  
발 의 자 : 김기창, 서동학, 박우양,  
연철흙, 전원표, 황규철,  
송미애, 이상식

**1. 제안이유**

-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징수방법 변경(안 제3조)
  - 현행 수입증지 → 개정안 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
- 수수료의 면제 변경(안 제4조)
  -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→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

**3. 조례안 : 붙임**

**4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8. 18. ~ 2021. 8. 23.(의회 홈페이지)

##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 중 “제53조1항에 따라 산출” 을 “제53조제1항에 따라 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소요되는” 을 “드는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관계공무원” 을 “관계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수입증지” 를 “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” 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일정규모” 를 “일정 규모” 로, “충청북도내” 를 “충청북도 내” 로, “시공사간” 을 “시공사 간” 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30%이상” 을 “30퍼센트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50%이상” 을 “50퍼센트 이상” 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“60%이상” 을 각각 “60퍼센트 이상” 으로 한다.

1.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  
제5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수수료) ①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3조1항에 따라 산출하고,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비운반 차량에 <u>소요되는</u> 경비</li> <li>2.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따른 <u>관계공무원의</u> 출장여비</li> </ol> <p>제3조(징수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 <u>수입증지</u>로 징수한다.</p> <p>제4조(수수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</u></li> </ol>	<p>제2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53조제1항에 따라 정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<u>드는</u> ----- -</li> <li>2. ----- ----- <u>관계 공무원</u>----- -----</li> </ol> <p>제3조(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<u>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</u> <u>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</u> <u>방법으</u>-. -----.</p> <p>제4조(수수료의 면제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</u></li> </ol>

2.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

가.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%이상 약정한 업체

나.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%이상 약정한 업체

다. 충청북도에 생산되는 자재를 60%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
라.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%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
제5조(수수료의 징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2. -----

----- 일정 규모

----- 충청북도

내 -----

-- 시공사 간 -----

-----

-----

가. -----

- 30퍼센트 이상 -----

나. -----

50퍼센트 이상 -----

다. -----

----- 60퍼센트 이상 -----

-----

라. -----

- 60퍼센트 이상 -----

-----

제5조(수수료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

----- 「지방행정제재·부

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--

-----.

## 관계법령

### [지방자치법]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### [전자정부법]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### [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]

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## [전자정부법]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